

국가데이터처, 한국경제인협회와 경제통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신뢰 가능한 경제통계 생산'에 상호 협력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4월 2일(목)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상근부회장 김창범)와 경제통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경제정책 지원을 위한 경제통계 개선 ▲ 기업의 통계조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협력 ▲ AI 및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협의회 참여 ▲ 양기관 보유자료의 상호 활용 등에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경제통계의 고도화가 국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가 경제정책의 근간 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부 부처와 민간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협력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정밀한 지도” 라며,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인 한국경제인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계에 담아 경제정책을 지원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산업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인 경제총조사가 실시되는 해로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사참여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경제총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자 국가 경쟁력의 기반” 이므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경협은 국가데이터처의 협력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기업의 통계조사 참여가 데이터 생태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고 말했다.

향후 국가데이터처는 금번 협약이 단순 일회성 협약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경제인협회와 정기적 상설 협의회를 개최하고 협력과제 발굴 및 이행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경제정책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통계 생산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경제통계국	책임자	과 장	김혜련 (042-481-3770)
	경제총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042-481-1258)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왼쪽)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경제통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중앙 좌측)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중앙 우측)이 관계자들과 경제통계 개선을 위한 국가데이터처-한국경제인협회 업무협약 체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업 무 협 약 서

국가데이터처와 한국경제인협회(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경제통계 개선과 기업의 조사 참여 등에 관해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국가 경제 기초 데이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경제통계 개선 및 데이터 활용 확대에 관한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운영원칙) 양 기관은 상호협력 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 (협력분야) 양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1. 경제정책 지원을 위한 경제통계 개선 협력
2. 기업의 통계조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협조
3. AI 및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협의회 참여
4. 양 기관 보유 자료의 상호활용에 대한 협력
5. 경제일반 및 경제통계 부문 교육 협력

제4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양 기관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업무 관련자 중심의 협의회를 개최하며,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제5조 (정보 교류) 양 기관은 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의 공동 활용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과 양해각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③ 본 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제8조 (개정) 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① 본 협약을 통해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상호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는 협약서의 효력 상실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 (비용부담) 업무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법적구속력 배제) 양 기관은 본 협약으로 인해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서명 후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6년 4월 2일



처장 안 형 준



상근부회장 김 창 범